

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350 |
|----------|-----|

제출년월일 : 2017. 8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 변화로 각종 난치성 질병 발병율이 높을 것이라는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의 높은 우려를 해소하고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을 정비하여 시행함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불만감 해소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(조례안 제6조의2)

- ①항에 시행령 제27조제1항의 내용 추가
 - 법 제22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②항에 다음 각 호 신설(영 제27조제1항 별표 3의 그 밖의 사업 관련)
 1. 건강검진
 2. 교육 및 홍보
 3. 그 밖에 군수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한시적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에 해당됨
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출)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17. 4. 21. ~ 4. 28.) 결과, 제출의견 없음.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 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개선의견에 따른 반영계획서 제출
- 5) 조례규칙심의회 : 원안의결

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”을 “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위하여”를 “지원하기 위하여”로 한다.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주변영향지역 지원 등)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② 군수가 영 제27조제1항 별표 3 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건강검진
2. 교육 및 홍보
3. 그 밖에 군수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확보와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촉진및주변지역 지원등에관한법률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및 동법 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5조(주민지원기금 조성) ①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을 조성하며, 법 제21조 제2항제1호의 출연금액은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한다.</p> <p>② · ③ (생략)</p> <p><신설></p> | 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조(주민지원기금 조성) ①----- ----- ----- ----- 지원 하기 위하여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의2(주변영향지역 지원 등) 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한다. ② 군수가 영 제27조제1항 별표</p> |

3 제4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건강검진

2. 교육 및 홍보

3. 그 밖에 군수가 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관계법령 발취

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

제21조(주민지원기금의 조성)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.

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(出捐金)
2.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
3. 제8조에 따른 가산금
4.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
5.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·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

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·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3.8.13.>

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·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07.12.27.]

제22조(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)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.

④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2.3.>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, 지원기준·방법, 공개내용·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5.2.3.>

[전문개정 2007.12.27.]

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27조(주변영향지역 지원 등)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,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,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.

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지원의 목적
2. 지원기간
3.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
4.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
5.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

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사항 및 지원 대상지역을 지원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8.3.>

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당 연도 지원사업의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8.3.>

1. 지원 목적
2. 지원 기간
3. 지원사업의 내용
4. 지원 금액
5. 지원 대상지역

[별표 3] <개정 2009.6.16>

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(제27조제1항 관련)

| 사업 구분 | 사업 내용 |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|
|------------|---|--|
| 1. 소득증대 사업 | 농림수산업시설 | 공동영농·영어(營漁)시설(공동영농기계·공동축산·공동어선을 포함한다), 농기구 수리시설, 공동양식·양어장, 생산품 공동저장소, 공동가공공장, 농업용 저수지, 농로(農路), 임도(林道), 농업용수로, 농업용양수장,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|
| | 상공업시설 | 공업용 수도, 직업훈련소, 시장, 공용창고, 구판장(購販場), 소규모 공단 등 |
| | 관광산업 | 휴게소, 휴양소, 토산품 판매장 등 |
| 2. 복리증진 사업 | 의료시설 | 보건진료소 등 |
| | 사회복지시설 | 노인회관, 마을회관, 공중목욕탕, 가로등, 어린이놀이터, 버스승차대기장 등 |
| | 도로시설 | 소규모 도로 등 |
| | 항만시설 | 소형선박용 항만시설, 소규모 어항, 호안옹벽(護岸擁壁), 방파제 등 |
| | 상하수도시설 | 상수도시설·하수도시설 등 |
| | 교육·문화시설 | 도서관, 유치원, 통학차, 문화시설, 향토박물관, 사적시설, 사회교육시설 등 |
| | 환경·위생시설 | 쓰레기처리시설, 배수구시설, 청소차, 공중위생시설, 환경감시시설 등 |
| | 운동·오락시설 | 운동장, 야영장, 운동기구 등 |
| | 전기·통신시설 |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,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|
| 그 밖의 시설 | 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(소각시설만 해당한다),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(냉방·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) 등 | |
| 3. 육영사업 | 컴퓨터·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,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, 장학기금 적립, 학교급식 지원 등 | |
| 4. 그 밖의 사업 |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·복리증진사업·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| |

※ 비고: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,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·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·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간접영향권 주민 건강 검진료 : 62,500,000원
500,000원/1인 × 125명(30세 이상) = 62,500,000원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5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.

4. 작성자

| | |
|-----|------------------|
| 작성자 | 평창군 환경위생과장 장재석 |
| 연락처 | (033) 330 - 2340 |